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6, No. 140, pp.395-438  
<https://doi.org/10.29212/mh.2026..140.395>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논문 5

## 조선 주둔 일본군의 군용지 운용과 지역사회의 계층별 대응

이민성 | 건국대학교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 목 차
1. 서론
  2. 군사연습장 확보와 조선 주둔 일본군의 공간 인식
  3. 군용지 운용과 지역사회 계층별 차등
    - 가. 군용지 접근의 차등: 일본인 내부자와 조선인 지주
    - 나. 위임 관리와 소작인 계층에 대한 중간 수탈
    - 다. 유희 군용지 처분과 기층민의 축출
  4. 결론

**초 록** 이 글은 1915년 「군용지 정리에 관한 협정」과 1916년 「군용지대 부규정」이라는 제도적 기반 위에서 이루어진 조선 주둔 일본군의 군용지 운용 실태와, 그에 대한 지역사회의 계층별 대응을 검토한다. 두 제도는 군용지의 법적 소유권을 조선총독부에 두면서도 그 이용·관리·수익권과 자산 교환의 권한을 군에 부여하였다. 이로써 군의 요구에 따라 총독부가 매수를 집행하는 구조 아래에서, 군은 토지 매수와 임대차라는 두 접점에서 지역사회의 여러 계층과 마주하게 되었다.

먼저 군사연습장의 확보 과정을 보면, 협정이라는 제도가 군에게도 일률적으로 관철되지 않았다. 여의도와 창녕이 계획을 웃돈 반면 평강·곡산은 절반에도 못 미쳤고, 「토지수용령」은 재조일본인 자본가에게는 발동되지 못한 채 일반 지주에게만 동원되었다. 조선 주둔 일본군은 예산과 지가, 자산 교환의 조건에 행위를 규정받는 존재였다.

다음으로 군용지의 접근·관리·처분이라는 세 국면에서, 같은 제도는 계층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았다. 매수와 강제 수용은 총독부, 이용과 수익은 군, 징수는 면이 담당하는 권한 분산이 그 조건이었다. 정보와 법의 보호는 민족과 계급이 겹친 위치에 따라 차등 있게 주어졌다. 식민권력 내부의 일본인 관료와 자본은 정보를 선점하여 차익을 거두었고, 조선인 지주층은 일본인 중개자를 거쳐야 하는 위험한 교섭의 문턱 앞에 섰으며, 소작농과 기층민은 그 문턱 바깥에서 생활 기반을 잃었다.

식민지 조선에서 군용지의 운용은 군사적 식민지배의 공간적 토대를 구축하는 과정이면서, 다른 한편으로 그 토대 위에서 지역사회의 계층을 갈라놓는 과정이었다.

주제어: 조선 주둔 일본군, 군용지, 군사연습장, 계층, 소작쟁의, 토지 수용

## 1. 서론

식민지 조선에서 일본군은 병력을 주둔시키기 위하여 토지를 확보하였다. 군사적 목적에 사용된 토지, 곧 군용지는 조선 주둔 일본군이 지역사회와 직접 맞닿는 지점이었다. 종래 일제강점기 일본군에 관한 연구는 전투와 강제동원, 전시 총동원체제에 초점을 두었다. 병합 전후의 무력행사나 전시체제기의 동원과 달리, 그 사이 시기 식민지의 일상에서 군이 지역사회와 어떠한 관계를 맺었는지는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다.

군용지를 검토하는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 군용지의 취득과 관리에는 조선 주둔 일본군과 조선총독부, 도·군·면의 행정기관, 토지를 소유하거나 경작하던 주민이 모두 관여하였다. 군용지의 운용을 따라가면 군이 식민 지배기구 안에서 차지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둘째, 군용지는 군사적 필요가 지역사회의 생활 기반과 충돌하는 자리였다. 토지의 매수와 임대차는 주민의 소유권과 경작권에 직접 관계된 문제였고, 지역사회의 각 계층은 서로 다른 대응을 보였다.

군용지 관리의 제도적 기반을 다룬 연구는 많지 않다. 현재까지 확인되는 연구는 두 편이다. 남용협은 1900년 전후 서울을 중심으로 일본군의 주둔지 설정 과정을 검토하여, 군용지의 확보가 도시형성에 미친 영향을 밝혔다.<sup>1)</sup> 이민성은 「군용지 정리에 관한 협정」과 「군용지대부규정」을 분석하여 조선 주둔 일본군의 군용지 확

1) 남용협, 『朝鮮半島における旧日本軍の駐屯地設定と都市形成に関する研究－1900年 前後のソウルを中心にして－』, 名古屋大学大学院環境学研究科 博士論文, 2022.

보 경로와 관리제도가 구축되는 과정을 정리하였다.<sup>2)</sup> 두 연구를 통하여 군용지를 둘러싸고 조선 주둔 일본군과 조선총독부가 맺은 제도적 관계가 해명되었다. 다만 제도의 구조를 밝히는 데 초점이 있었던 만큼, 제도가 현장에서 작동한 결과와 그에 대한 지역사회의 대응은 검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제도의 구조가 밝혀진 이상, 다음 과제는 제도가 현장에서 작동한 결과를 확인하는 일이다.

이하 두 연구가 밝힌 제도적 정비의 경위를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식민지 조선에서 군용지에 대한 제도적 정비는 조선 주둔 일본군과 조선총독부의 협의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본래 주차(駐紮) 방식으로 병력을 운용하던 시기, 조선 주둔 일본군은 이른바 조선의 ‘치안 유지’를 우선하여 병력을 전국에 분산 배치하였다. 국권 피탈 시기부터 이어진 의병 탄압 등의 활동 과정에서 조선 주둔 일본군은 각지에서 토지를 점탈하였고, 병력이 분산된 만큼 군사적 목적의 토지인 군용지 또한 전국에 산재하게 되었다.

분산 배치된 군용지가 정비 대상이 된 계기는 상주(常駐) 사단의 설치였다. 일본육군은 군비(軍備) 확장을 통한 ‘대륙 침략’을 목적으로 조선에 상주 사단을 설치하였다. 상주 사단의 설치는 위수지(衛戍地)를 선정하고 분산 배치된 병력을 집중시킨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위수지 선정과 병력 집중 과정에서 새 군용지를 확보할 필요가 생겼다. 상주 체제의 확립에 필수적인 군사시설인 군사연습장 또한 설치하여야 했다. 동시에 주차군 시절의 군용지 중 군사적 효용성이 낮아진 토지를 처분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1915년 조선 주둔 일본군과 조선총독부는 「군용지 정리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협정에 따라 조선 군용지의 법적 소유권은 조선총독부에 귀속되

2) 이민성, 「조선 주둔 일본군의 군용지 확보와 관리제도 구축」, 『승실사학』 56, 숭실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2026.

었다. 식민지 조선의 군용지 모두가 총독부의 재산으로 취급된다는 의미였다. 그러나 군용지를 이용·관리하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거둘 권한은 조선 주둔 일본군에 귀속되었다. 총독부의 소유권은 명목상의 것이었다. 나아가 조선 주둔 일본군은 보유 군용지 중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토지의 관리·수익권을 총독부에 이관하고, 그 토지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반으로 신규 군용지의 확보를 총독부에 요구할 수 있었다. 총독부는 그 금액 한도 내에서 요청받은 신규 군용지를 매수할 의무를 졌다.

협정 부속 조항에는 이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실제 양자의 토지 이관 내역이 갑·을 두 표로 정리되어 있다.<sup>3)</sup> ‘갑’은 경성 도심의 불용 군용지를 이관하는 대신 여의도 연습장과 용산(둔지미) 군용지를 확보한다는 내용이었다. ‘을’은 전국에 산재한 중·소규모 군용지를 이관하고 평강·곡산·창녕·정평에 군사연습장을 확보한다는 요구였다.

본 글은 여의도·평강·곡산·창녕·정평 다섯 곳의 연습장 확보 과정을 우선 다룬다. 대규모 군사연습장의 확보는 해당 지역 토지의 매수를 전제하였고, 이 과정에서 조선 주둔 일본군은 지역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계층과 마주하게 되었다. 즉, 조선 주둔 일본군과 지역사회의 첫 번째 ‘접점’이 나타났다.

한편 협정 제6항은 군용지의 ‘유료 대부’에서 발생한 수입의 귀속을 규정하였다.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육군 관리지로서 「육군영선비보충자금특별회계법」에 의거하여 육군이 유료 대부 혹은 자영파식(自營播植)하는 것의 수입은 종전대로 육군영선비보충자금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sup>4)</sup>

3) 『龍山軍用地管理換關係書類』, CJA0003979, 521~522쪽.

4) 『龍山軍用地管理換關係書類』, CJA0003979, 520쪽.

조항은 군용지의 일부를 민간에 유료로 임대하고 임대료를 수취하는 행위를 군의 권한으로 전제하면서, 그 수입을 육군영선비보충자금에 귀속시켰다. 협정 체결 이듬해인 1916년에 개정된 「군용지대부규정」은 임대차 관계의 세부를 정한 규정이었다. 군용지를 빌려 쓰는 임차인과 조선 주둔 일본군 사이의 임대차 관계가 두 번째 ‘접점’이다.

군용지의 취득과 처분에서 문제가 된 토지는 같은 범주가 아니었다. 군용지는 군사적 목적에 사용되는 토지의 총칭이었다. 하위 범주로는 부대가 주둔하는 병영과 위수지, 훈련에 사용하는 군사연습장과 사격장, 병기 관련 시설의 부지, 당장 사용하지 않는 잡종지와 유희지가 있었다. 범주에 따라 규모가 크게 달랐다. 협정부속 조항이 설정한 군사연습장의 계획 면적은 평강 약 2,000만 평, 곡산 약 2,500만 평이었다. 여의도와 창녕, 정평을 더하면 다섯 곳만으로 5,600만 평을 넘었다. 본 글이 다루는 대상은 군용지 전반이며, 군사연습장은 그 가운데 신규 취득의 대상이 된 범주이다. 처분의 대상은 주차군 시기에 확보되어 군사적 효용이 낮아진 토지였다.

군용지의 취득과 처분은 단일 기관의 결정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군용지의 취득과 처분에는 육군성과의 협의가 필요하였고, 조선 주둔 일본군의 판단이 곧 최종 결정이 되지는 않았다. 조선 주둔 일본군은 군사령부 경리부를 통하여 필요한 토지의 위치와 규모를 정하고 총독부에 확보를 요구하였다. 매수의 집행과 비용 부담은 조선총독부의 몫이었고, 실무는 도청과 군청, 면이 담당하였다. 「토지수용령」의 발동 권한은 군에 있지 않았다. 관리 단계에서도 임대료의 징수와 소작인의 선정은 지방 행정기관이나 지역 유력자에게 위임되는 경우가 많았다. 조선 주둔 일본군이 직접 행한 권한은 군용지의 이용과 수익, 임대 조건의 결정에 한정되었

다. 즉, 군의 요구가 곧 집행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군의 요구와 총독부의 집행, 지방 행정기관의 실무가 각각 다른 이해에 따라 움직였고, 지역사회는 세 층위를 동시에 상대하여야 하였다. 권한이 여러 기관에 나뉘어 있었다는 사실은 군용지 운용의 실태를 이해하는 전제가 된다.

본 글에서는 「군용지 정리에 관한 협정」과 「군용지대부규정」이라는 제도적 기반 위에서 이루어진 군용지 운용의 실태를 밝히고자 한다. 여기서 운용이란 두 제도가 실제로 작동한 국면 전체, 곧 신규 군용지의 취득에서 기존 군용지의 유료 대부 등에 이르는 과정을 가리킨다. 군용지를 매개로 한 두 ‘접점’에서 조선사회의 다양한 계층이 어떠한 이해관계를 드러내고 어떻게 대응하였는지 확인하는 것이 본 글의 과제이다.

이용 자료는 다음과 같다. 조선 주둔 일본군과 육군성의 방침은 아시아역사자료센터 소장 육군성 문서와 『朝鮮師團營舍建築史』등에서 확인하였다. 총독부와 군의 협의 문서는 국가기록원 자료로 보완하였다. 지역사회의 대응은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보도에 주로 의거하였고, 조선 주둔 일본군의 공간 인식은 부대사 회고로 확인하였다.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군사연습장의 확충 과정을 검토한다. 3장에서는 군용지의 접근과 관리, 처분이라는 세 국면에서 지역사회의 계층별 대응을 살핀다. 이로써 군용지 운용의 계획과 실제 사이의 간극을 파악하도록 하겠다.

## 2. 군사연습장 확보와 조선 주둔 일본군의 공간 인식

병영이 부대의 주둔 공간이라면, 군사연습장은 훈련 공간이었다. 그러나 한국주차군 시기까지 한반도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규모 연습장은 나남 포병대가 확보한 산성산 사격 연습장이 거의 유일하였다. 일본육군이 상주 사단을 설치하기로 한 이상, 주요 위수지 인근에 대규모 연습장을 새로 확보하는 일은 피할 수 없는 과제였다. 「군용지 정리에 관한 협정」은 연습장 확보의 제도적 통로였다. 본 장에서는 조선 주둔 일본군이 「군용지 정리에 관한 협정」을 바탕으로 수립한 연습장 확보 계획이 실제 설비 과정에서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검토한다.

조선 주둔 일본군 상주 체제의 확립에서 군사연습장의 확보는 부대 주둔지 결정에 영향을 줄 만큼 핵심적인 사안이었다. 상주 사단 설치 과정에서 나타난 조선총독부와 육군성의 논의가 연습장 확보 문제의 비중을 잘 보여준다. 육군성은 주력 부대를 평양에 배치하고자 하였다. 시가지화가 진행되어 지가가 높은 용산에서는 충분한 훈련 부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반면, 평양에서는 연습장 부지의 확보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선총독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는 군대 주둔을 통한 식민지배의 정치적 효과를 중시하여 주력 부대의 용산 주둔을 주장하였다. 양측의 의견이 맞서자 조선 주둔 일본군은 연습장 후보지를 재조사하여 용산 위수용으로 평강을, 평양 위수용으로 곡산을 선정하였다. 총독부가 평강 일대의 토지 문제 해결을 약속하면서 주력 부대의 용산 주둔이 최종 결정되었다. 용산 주둔 결정 역시 평

강 연습장의 확보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연습장 확보 가능성 자체가 주력 부대의 주둔지를 가를 만큼 중요한 문제였다.<sup>5)</sup>

군사연습장의 확보 계획은 다음과 같다. 「군용지 정리에 관한 협정」 부속 조항은 용산 주둔 부대용으로 여의도 일대 약 140만 평의 편입을 규정하였다. 여의도 외에 평강·곡산·창녕·정평의 대규모 토지를 군사연습장 부지로 지정하였다. 계획 규모는 평강 약 2,000만 평, 곡산 약 2,500만 평, 창녕과 정평 각각 약 500만 평이었다. 조선 주둔 일본군은 대구와 함흥 주둔 부대를 위하여 각각 500만 평 규모의 부지 확보를 추진하였다. 그런데 대구 부대용 연습장에는 입지에 관한 단서가 붙어 있었다. 대구 주둔 보병 제80연대의 1개 대대가 대전에 분산 배치될 예정이었기 때문이다. 단서의 내용은 연습장을 대전 주둔 부대도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마련한다는 것이었다.<sup>6)</sup>

단서의 반영 여부는 연습장의 실제 입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설비 계획에 포함된 군사연습장은 여의도·평강·곡산·창녕·정평 다섯 곳이었다. 여의도와 평강 연습장을 용산 주둔 부대가, 곡산 연습장을 평양 주둔 부대가 사용할 예정이었음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남은 부지는 창녕과 정평이었다. 규모와 위치를 감안하면 경상남도 창녕은 대구 주둔 부대용, 함경남도 정평은 함흥 주둔 부대용 연습장으로 비정할 수 있다.

그런데 창녕의 위치는 대구 부대용 연습장에 붙은 단서와 어긋난다. 대전 주둔 1개 대대의 이용까지 고려한다면 연습장은 대구와 대전 사이에 두는 편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창녕은 대구 이남

5) 1915년 조선 주둔 일본군 주력 부대의 배치에 관한 데라우치 총독과 육군성의 의견 충돌, 그리고 연습장 설정에 관해서는 이민성, 「1928년 식민지 조선 '병비충실' 운동의 추이와 성격」, 『한국문화』 97,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22, 59~60쪽 참조.

6) 朝鮮軍經理部, 『朝鮮師團營舍建築史』, 1923, 9~10쪽.

에 있다. 창녕의 선정은 대전 주둔 부대의 접근성을 고려한 당초 계획이 배제되었음을 시사한다.

창녕 선정에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였다. 우선 일본육군이 상주 체제에서 대전 주둔 부대의 군사전략적 중요도를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더 결정적인 요인은 지리적·경제적 제약이었다. 대전과 대구 사이에서 500만 평 규모의 연습장 부지를 예산 안에서 확보하기는 어려웠을 가능성이 크다. 부지의 선정은 군의 판단에 따랐으나, 예산의 편성과 매수의 집행은 총독부에 속한 사무였다. 군용지의 확보를 군의 일방적 강제로만 이해해서는 실제 과정을 설명하기 어렵다. 창녕 선정은 행정적·지리적·경제적 조건 속에서 조선 주둔 일본군이 대전 주둔 부대의 이용을 포기하고 얻어낸 타협이었다.

결국 「군용지 정리에 관한 협정」에 의거하여 설정된 군사연습장 설비 계획은 <표 1>과 같다.

<표 1> 1915년 조선 군사연습장 설비 계획<sup>7)</sup>

| 지역  | 세부 주소    | 용도                    |
|-----|----------|-----------------------|
| 여의도 | 경기도 고양군  | 용산 제(諸) 부대용           |
| 평강  | 강원도 평강군  | 용산 야포병 사격장 및 용산 제 부대용 |
| 곡산  | 황해도 곡산군  | 평양 제 부대용              |
| 창녕  | 경상남도 창녕군 | 마산 중포병 사격장 및 대구 보병연대용 |
| 정평  | 함경남도 정평군 | 함흥 보병연대용              |

<표 1>에서는 각 연습장의 위치와 사용 부대를 확인할 수 있다. 여의도·평강·곡산의 사용 부대는 앞에서 확인한 바와 일치하고, 창녕과 정평의 용도 역시 각각 대구 보병연대용, 함흥 보병연대용

7) 朝鮮軍經理部, 『朝鮮師團營舍建築史』, 1923, 38쪽.

으로 비정과 부합한다. 다만 창녕의 용도에서 대전 주둔 부대에 대한 고려는 확인되지 않는다. 대신 마산 중포병 부대의 사격장 용도가 추가되었다. 조선 주둔 일본군은 당초의 구상을 고수하기보다 실제 부대 배치와 이용 가능성에 맞추어 연습장의 용도를 조정하였다.

각 군사연습장의 설비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여의도 군사연습장의 설비는 1915년에서 1916년 사이에 추진되었다. 조선 주둔 일본군은 총독부가 보유한 국유지 131만 평을 군용지로 전용하고, 「군용지 정리에 관한 협정」에 의거하여 민유지 44만 평을 추가로 매수하였다. 「군용지 정리에 관한 협정」 부속 조항에 기재된 여의도 군사연습장의 규모가 약 140만 평이었으므로, 최종 확보 면적 175만 평은 당초 계획을 35만 평 웃돌았다. 여의도 군사연습장은 비행기 이착륙장을 겸하였다.<sup>8)</sup>

그런데 부지 안에는 총독부가 매수하지 못한 민유지가 있었다. 총독부와 깊이 유착한 토목청부업자 아라이 하츠타로(荒井初太郎)<sup>9)</sup>가 소유한 토지 약 8만 4,270평이었다. 아라이는 목장과 우사(牛舍) 등의 가격 협상에 응하지 않았다. 총독부는 「토지수용령」 적용을 검토하였으나, 아라이와의 특수 관계를 고려하여 목장을 존치시킨 채 연습장을 사용하는 변칙적 합의에 이르렀다. 조선 주둔 일본군은 아라이의 목장을 두고 “식수 확보와 휴식에 유리하다”고 합리화하였다.<sup>10)</sup> 그러나 변칙적 합의의 실질은 재조일본인 자본가의 이권 앞에서 식민권력이 물러선 결과였다.

여의도 군사연습장의 설비는 「군용지 정리에 관한 협정」이 연습장 확보의 통로로 기능하였음을 보여준다. 조선 주둔 일본군은 협

8) 朝鮮軍經理部, 『朝鮮師團營舍建築史』, 1923, 40쪽.

9) 김명수, 「재조일본인 토목청부업자 아라이 하츠타로(荒井初太郎)의 한국진출과 기업활동」, 『경영사학』 26, 2011.

10) 朝鮮軍經理部, 『朝鮮師團營舍建築史』, 1923, 40쪽.

정에 의거하여 국유지 전용과 민유지 매수를 결합함으로써 당초 계획을 웃도는 부지를 확보하였다. 그러나 같은 협정의 토지 매수 절차는 아라이 하츠타로의 토지 앞에서 한계를 드러냈다. 총독부는 「토지수용령」이라는 강제 수단을 보유하고도 발동하지 못한 채 목장의 존치를 받아들였다. 제도가 갖춘 강제력이 실제로는 일률적으로 관철되지 못하고 상대가 식민권력과 맺은 관계에 따라 굴절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평강 군사연습장이다.<sup>11)</sup> 평강 군사연습장의 매수는 1920년에 시작되었다. 1915년 계획 규모는 2,000만 평이었으나, 실제 확보 면적은 계획의 42.5%인 850만 평에 그쳤다. 지가가 올라 예산의 제약을 받았기 때문이다. 협정에 따라 토지 매수의 집행과 비용 부담은 총독부의 의무였다. 그러나 상승한 지가가 총독부 예산을 초과하자, 조선 주둔 일본군이 정평 연습장 설정 과정에서 확보한 이관 수입 3만 2,200엔을 평강 연습장 매수비로 전용하여 부족분을 메웠다. 협정의 원칙을 벗어나 군이 매수에 직접 개입하였다.

총독부가 담당한 매수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하였다. 연습장 예정 구역 안에 사유지 120만 평이 산재하여 지가 상승을 부추겼다. 120만 평의 민유지 문제는 1923년까지 해결되지 못하였다. 결국 총독부는 남은 민유지에 「토지수용령」을 적용하고 보상금 3만 원을 교부하여 강제 수용을 단행하였다. 설비 과정에서는 총독부의 행정 실책도 치명적으로 작용하였다. 총독부는 연습장 매수와 별개로 평강 군사연습장 서북쪽의 수리조합 저수지 사업을 인가하였다. 저수지 사업이 진행되면서 저수지로 이어지는 개울의 폭이 최대 400m까지 넓어졌고, 군사연습장은 개울을 경계로 둘로 나뉘었다. 북쪽 연습장은 도하가 불가능하여 사실상 사용할 수 없었

11) 朝鮮軍經理部, 『朝鮮師團營舍建築史』, 1923, 41쪽.

다. 총독부는 대안으로 남쪽 부지의 추가 확보를 검토하였으나, 남쪽 부지는 용암이 산재하여 훈련에 부적합하였다.

다음은 곡산 군사연습장이다. 곡산 군사연습장의 수용은 1920년에 시작되었다. 계획 규모는 2,500만 평이었으나, 곡산 연습장에서도 지가 폭등과 지주의 반발이 나타났다. 그 결과 확보 면적은 계획의 24%인 약 600만 평에 그쳤다. 평강 연습장의 42.5%에 비해서도 낮았다. 아라이 하츠타로 사례와 달리 총독부는 일반 지주들에게 「토지수용령」을 즉각 적용하였으나, 확보 면적은 제한적이었다.<sup>12)</sup> 곡산 연습장은 축소된 규모뿐만 아니라 평양에서 약 90km 떨어져 있다는 점도 문제였다. 조선 주둔 일본군은 거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평양에 더 가까운 수안(遂安)에 연습장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수안 연습장 확보는 내부 정보의 유출과 투기 세력의 개입으로 실패하였다.<sup>13)</sup> 총독부는 1922년 곡산의 민유지 매수를 마치고 이용·관리 권한을 조선 주둔 일본군에 이관하였다.

창녕 군사연습장은 대구 보병 제80연대와 마산 중포병 부대의 공용 시설이었다. 창녕 연습장은 대구와 마산에서 각각 약 45km 거리에 있었다. 창녕 연습장의 매수는 1921년부터 약 1년 동안 진행되었다. 조선 주둔 일본군 기록에 따르면 창녕 연습장의 토지 매수는 상대적으로 원활하였다. 그 결과 마산 중포병대의 사격 훈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당초 계획 500만 평보다 110만 평 늘어난 610만 평을 확보하였다.<sup>14)</sup>

정평 군사연습장은 함흥 주둔 부대용이었다. 계획 규모는 약

12) 朝鮮軍經理部, 『朝鮮師團營舍建築史』, 1923, 43쪽.

13) 수안 연습장 확보 과정과 내부 정보 유출, 투기 세력의 개입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서술한다.

14) 朝鮮軍經理部, 『朝鮮師團營舍建築史』, 1923, 45쪽. 군 기록이 말한 ‘원활’한 수용이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는 다음 장에서 서술한다.

500만 평이었으나 최종 확보 면적은 369만 500평으로 줄었다. 평강·곡산과 달리 정평의 축소는 지가 상승이나 주민과의 충돌 때문이 아니었다. 조선 주둔 일본군이 총독부에 이관하기로 한 평양의 군용지 일부가 도쿄 포병공창 소관 조선병기제조소로 전용되면서, 자산 교환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다. 조선 주둔 일본군은 평양 군용지 약 80만 평 가운데 절반의 제공을 취소하였다. 대신 실제로 이관한 나머지 절반의 가액(價額) 12만 엔 가운데 8만 7,800엔을 정평 민유지 매수에 투입하고, 남은 3만 2,200엔은 평강 연습장의 매수비로 충당하였다.<sup>15)</sup>

다섯 연습장의 설비 과정은 「군용지 정리에 관한 협정」이라는 제도적 기반이 현장에서 일률적으로 관철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여의도와 창녕이 각각 계획을 35만 평, 110만 평 웃돈 반면, 평강은 계획의 42.5%, 곡산은 24%에 그쳤고 정평도 계획에 미치지 못하였다. 축소의 사유는 한 갈래가 아니었다. 평강과 곡산에서는 지가 폭등과 지주의 반발이, 정평에서는 평양 군용지의 전용에 따른 자산 교환의 차질이 면적을 갈랐다. 「토지수용령」 또한 모든 지주에게르게 적용되지 않았다. 총독부는 아라이 하츠타로에게는 강제 수단을 보유하고도 발동하지 못한 채 목장의 존치를 받아들였으나, 평강과 곡산의 일반 지주에게는 수용령을 동원하였다. 강제력의 행사가 상대와 식민권력의 관계에 따라 갈랐다. 조선 주둔 일본군은 예산과 지가, 자산 교환의 조건에 행위를 규정받는 존재였고, 축소와 전용, 변칙적 합의를 거듭하며 연습장을 확보하였다. 그럼에도 1920년대 전반에 이르러 여의도·평강·곡산·창녕·정평으로 이루어진 연습장 체계가 모습을 갖추었다.

이렇게 확보된 연습장이 실제 훈련에서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는 부대사(部隊史)의 회고에서 확인된다. 용산에 주둔한 보병 제79연

15) 朝鮮軍經理部, 『朝鮮師團營舍建築史』, 1923, 47쪽.

대의 부대사 『보병 제79연대사』에 한 장교의 회고가 실려 있다. 회고록에는 군사연습장을 바라보는 조선 주둔 일본군의 시선이 드러난다.

당시 조선의 명물은 민둥산으로, 추계 연습이나 제반 연습 때는 예상 전장인 만주의 광야와 흡사하고, 적어도 ‘내지(內地)’의 그것과는 면목이 일변하여, 자못 안성맞춤이었다.

… (중략) … 용산 연병장이나 황학산 일대, 특히 한강의 큰 강물이 용산 남측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 광대한 백사장의 하천 부지가 곳곳에 충분한 연습장을 제공해 주었다. 게다가 여의도 일대도 훌륭한 연습장이었다. 전투 사격장은 서대문 밖의 홍제원 일대, 또 관악산 남쪽 기슭의 봉천리, 거기에 부평이나 평강의 연습장이 있었다.

야영은 평강 대연습장의 임시 막사에 숙영하며 보낸 나날이 실로 효율적이었다. 그 오가는 길을 이용한 연습은 지금도 인상에 남는다. 평강 연습장은 이미 조선의 등뼈인 태백산맥 중에 있어, 온 산이 거의 민둥산으로 대륙적 양상을 띠고, 한층 훈련에 편리하여, 열기를 띠었다.<sup>16)</sup>

회고록에는 조선 주둔 일본군의 식민주의적·팽창주의적 인식이 드러난다. 조선 주둔 일본군은 조선의 혈빛은 ‘민둥산’을 “명물”이라 부르며, 일본 ‘내지(內地)’에서는 볼 수 없는, 예상 전장인 만주의 광야를 빼닮은 지형으로 반겼다. 혈빛은 민둥산을 조선 주둔 일본군은 만주 침략 훈련에 “안성맞춤”인 공간으로 전유하였다. 회고록에서 드러나는 또 하나의 사실은 연습장의 분포이다. 연습장은 사단 증설 초기의 대규모 부지에 국한되지 않고 경성 인근

16) 歩兵第七十九聯隊史編集委員會 編者, 『歩兵第七十九聯隊史』, 歩兵第七十九聯隊史編集委員會, 1984, 92쪽.

전역으로 확산되었다. 용산 연병장과 황학산 일대, 용산 남측 한강의 백사장 하천 부지가 연습장으로 쓰였고, 여의도 일대도 연습장으로 거론된다. 전투 사격장으로는 서대문 밖 홍제원과 관악산 기슭의 봉천리 일대가 쓰였고, 부평에도 연습장이 있었다. 회고록에 나타난 이러한 분포는 1915년 협정으로 확보한 대규모 연습장 외에도 군사연습장이 경성 인근으로 확산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1924년 육군성이 총독부에 보낸 「陸普 第680號」는 회고록에 나타난 연습장의 확산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문건이다. 조선 주둔 일본군은 “전술 변혁과 교육방법의 개정”을 근거로 “소규모 연습장”의 추가 확보를 역설하였고, 이미 매수를 마친 지역에 대해서도 확장과 변경을 요청하였다.<sup>17)</sup> 소규모 연습장의 추가 확보는 「군용지 정리에 관한 협정」을 활용한 추가 협상의 산물이자, 군사적 식민지배의 공간적 확대를 뜻하였다.

부평 연습장의 건설 경위에는 조선 주둔 일본군의 “소규모 연습장” 부지 확보 전략이 나타난다. 1915년 「군용지 정리에 관한 협정」에 따른 초기 설비 과정에서 예산 부족이 발생하였음은 앞서 서술한 바와 같다. 기존에 육군이 제공한 군용지만으로는 목표를 이루기 어려웠으므로, 조선 주둔 일본군은 모모야마(桃山)의 구(舊) 탄약고 터와 경성 광화문 지역의 군용지 및 시설물을 총독부에 추가로 제공하였다. 그러나 연습장 규모가 축소되면서, 추가로 확보한 재원 약 5만 엔이 도리어 남게 되었다.

조선 주둔 일본군은 약 5만 엔의 잔액을 들여 용산에서 ‘1일 행군 거리’에 있는 부평에 연습장을 추가로 설치하기로 하였다. 부지는 평당 20전 내외로 약 15만 평의 매수를 전망하였으며, 그 가운데 5만 평은 국유림을 군용지로 편입하여 활용할 계획이었다. 총독부는 1923년부터 민유지 매수에 착수하여 예산 안에서 부지를

17) 『龍山軍用地管理換關係書類』, CJA0003979, 532쪽.

확보하였다. 특수 병과용으로는 1925년 회령군 벽성면 일대에 공병대의 가교(架橋) 건설 연습장이 설비되었다.<sup>18)</sup> 이로써 군의 요구와 총독부의 매수를 거쳐 대규모 훈련장과 특수 병과용 소규모 훈련장의 건설이 마무리되었다.

조선 주둔 일본군은 단순 주둔을 넘어 훈련을 거쳐 전장에 즉각 투입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었다. 식민지 조선의 군사기지화가 일 단락되고, 군사적 식민지배의 공간적 토대가 구축되었다.

설비 완료 후 「육군연습장규칙」에 반영된 현황은 <표 2>와 같다. 특기할 점은 대전 보병부대가 평강과 창녕을 모두 사용하게 된 점과 평강 연습장이 항공부대 훈련장으로도 활용된 점이다.<sup>19)</sup> 회령 일대 가교 건설 연습장은 ‘연대외(煙臺外)’라고 불리었다. 다만 <표 2>는 규칙에 등재된 공식 연습장만을 보여준다. 앞서 회고록에서 확인한 홍제원·봉천리 일대나 한강 백사장처럼, 규칙에 오르지 않은 채 훈련에 쓰인 공간은 목록에서 빠져 있다. 조선 주둔 일본군의 실제 훈련 공간은 공식 연습장의 범위를 넘어 경성 인근으로 더 넓게 펼쳐져 있었다.

18) 「富平附近小演習場敷地買収の件」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Ref.C03011787500, 永存書類乙集第2類第1冊 大正12年(防衛省防衛研究所); 朝鮮軍經理部, 『朝鮮師團營舍建築史』, 1923, 47~48쪽; 「国有地管理換受の件」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Ref.C03011927100, 永存書類乙集第2類第2冊 大正13年(防衛省防衛研究所).

19) 평강 연습장은 본래 비행 연습용도가 아니었으나 추후 비행기 착륙장이 건설되었다. 「平康陸軍飛行機着陸場買収の件」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Ref.C03011931400, 永存書類乙集第2類第2冊 大正13年(防衛省防衛研究所).

〈표 2〉 1928년 조선 주둔 일본군 군사연습장 일람<sup>20)</sup>

| 관할<br>사단장 | 연습장 | 소재       |             | 사용 부대                    |
|-----------|-----|----------|-------------|--------------------------|
|           |     | 사단<br>관할 | 위치          |                          |
| 제19사단     | 산성산 | 조선       | 함경북도<br>회령군 | 나남·회령 부대 전체              |
|           | 정평  |          | 함경남도<br>정평군 | 함흥 보병 부대                 |
|           | 연대외 |          | 함경북도<br>회령군 | 회령 공병 부대                 |
| 제20사단     | 평강  |          | 강원도<br>평강군  | 용산·대전 부대 전체<br>평양 비행 부대  |
|           | 창녕  |          | 경상남도<br>창녕군 | 대구·대전 보병 부대<br>마산 중포병 부대 |
|           | 곡산  |          | 황해도<br>곡산군  | 평양 부대 전체                 |
|           | 부평  |          | 경기도<br>부천군  | 용산 부대 전체                 |

조선 주둔 일본군 장교가 남긴 평강 연습장 회고에도 조선 주둔 일본군이 점유 공간을 인식한 방식이 드러난다. 「군용지 정리에 관한 협정」을 통하여 군사적 식민지배의 물리적 토대가 갖추어진 평강 연습장에서, 조선 주둔 일본군이 누린 풍경과 정서는 다음과 같았다.

보병 제79연대의 추억이라 하면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평강 연습장이 특히 그림다. 주위를 산들이 둘러싼 해발 400미터

20) 「陸軍演習場規則中改正の件達」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Ref.C02030 612700,自大正14年01月至昭和02年12月「陸普綴 第1部」(防衛省防衛研究所).

의 고원(高原)에는, 이름 모를 수많은 풀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연습의 왕복이나 휴식 때 등, 이 풀꽃들을 바라보고는 잠시 연습의 피로도 잊을 정도였다.

어느 날의 연습에서, 돌격했던 나지막한 풀 덮인 산이 실은 화산의 작은 분화구 흔적이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놀라움이었다. 즉, 평탄한 평강 연습장 일대가 일종의 화산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던 셈이다. 나는 이 속세를 떠난 피서지 같은 평강에 가는 것이 큰 즐거움이었다. … (중략) …

평화 그 자체였던 평강 연습장이 훗날 실제 전장<sup>21)</sup>이 되리라고는, 유감스럽게도 북측 진지가 있는 작은 산에 가로막혀 평강 그 자체는 보이지 않았으나, 낮익은 주변의 산들이나 평강 북쪽에 이어지는 한 단계 높은 고원 대지도 멀리서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다행이었다.

현재도 조선반도는 남북의 대치가 계속되고 있다. 평강 고원의 가련한 풀꽃들이 두 번 다시 유혈로 물드는 일이 없기를 마음 속 깊이 기도해 마지않는다.

평강은 언제까지나, 평화로운 연습장이었으면 한다.<sup>22)</sup>

장교는 평강을 “속세를 떠난 피서지”로 회고하였다. 회고가 말한 “평화”는 조선의 토지가 훈련과 전쟁 준비의 공간으로 전용된 사실 위에 성립한 것이었다.

21) 맥락상 6·25 전쟁을 지칭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22) 歩兵第七十九聯隊史編集委員会 編者, 『歩兵第七十九聯隊史』, 歩兵第七十九聯隊史編集委員会, 1984, 302~303쪽.

### 3. 군용지 운용과 지역사회 계층별 차등

앞 장에서는 조선 주둔 일본군이 「군용지 정리에 관한 협정」을 바탕으로 여의도·평강·곡산·창녕·정평에 군사연습장을 확보하고 설비해 간 과정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연습장 부지의 확보는 빈 땅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주민이 거주하거나 경작하던 토지를 군용지로 편입하는 일이었다. 앞 장에서 보았듯이 조선 주둔 일본군 장교는 평강의 고원을 ‘평화’와 ‘안성맞춤’의 공간으로 기억하였으나, 같은 땅 위의 주민에게 평강은 군사적 필요에 따라 삶의 터전이 흔들리는 장소였다. 군용지를 둘러싼 군의 운용은 그 토지 위의 지역사회와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군용지 정리에 관한 협정」과 「군용지대부규정」은 조선 주둔 일본군의 토지 소유·관리·대부를 규율하였다. 본 장에서는 두 제도가 실제로 작동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 내부의 이해관계와 접근 조건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다룬다. 조선 주둔 일본군이 군용지에 접근하고 이를 관리하며 처분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 구성원은 서로 다른 위치에 놓였다. 군용지 접근 기회의 차등, 위임 관리에서 벌어진 중간 수탈, 유희 군용지의 처분과 주민 축출을 차례로 검토하여, 제도가 지역사회 내부의 계층에 따라 어떻게 다른 결과를 낳았는지 밝히고자 한다.

군용지의 운용에는 서론에서 정리한 대로 여러 기관이 관여하였다. 조선 주둔 일본군은 군용지의 이용·관리·수익권을 보유했으나, 매수의 집행과 「토지수용령」의 발동, 면장과 조합 간부의 임명은 총독부와 지방 행정기관의 권한이었다. 지방 행정에 대한 군

의 관여는 소관 사무의 범위를 넘지 않았다. 군이 군용지 운용에서 관철하고자 한 목표는 관리 비용의 절감과 세입의 안정적 확보였다. 지역사회가 군용지 문제를 제기할 때 마주한 상대는 군 경리부만이 아니라 도청과 군청, 면이었고, 세 층위의 권한이 어긋나는 자리에서 문제가 발생하였다.

지역사회의 계층은 단일한 기준으로 나뉘지 않았다. 군용지를 둘러싼 위치는 민족과 계급이라는 두 축이 겹쳐 결정되었다. 식민 권력 내부에 자리한 일본인 관료와 자본은 정보와 법의 보호를 먼저 누렸고, 식민권력 바깥의 조선인은 그렇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민족이 한 축으로 작용하였다. 동시에 같은 조선인 안에서도 지주와 소작농, 유력자와 기층민이 군용지 문제에 접근하고 대응할 수 있는 자원은 크게 달랐다는 점에서 계급이 또 다른 축으로 작용하였다. 계층이란 두 축이 교차하는 자리를 가리킨다. 어떤 사안에서는 민족 경계가, 다른 사안에서는 조선인 내부의 계급 경계가 더 뚜렷하게 드러났으며, 군용지의 운용은 그 두 경계를 동시에 노출시켰다. 이하에서는 접근·관리·처분의 세 국면에서 두 경계가 어떻게 작동하였는지를 차례로 살핀다.

#### 가. 군용지 접근의 차등: 일본인 내부자와 조선인 지주

군용지 문제에 접근하는 통로가 모두에게 열려 있던 것은 아니었다. 반환과 대부, 불하에 관한 정보가 식민권력 내부에 집중된 탓에, 정보에 닿을 수 있는지는 지역사회에서 차지한 위치에 따라 갈렸다. 정보를 먼저 전해 듣고 행정의 신용과 인적 연결망을 끌어올 수 있는 사람만이 군용지에 접근할 수 있었다. 조선인 지주층도 군용지 문제에 일정하게 개입하였으나, 식민지 행정체계와 어떤 관계를 맺었느냐에 따라 개입의 방식과 범위는 크게 달랐다. 같은 사안이라도 식민권력 안에 자리 잡은 일본인 관료와 중개자

에게는 전혀 다른 조건이 주어졌다. 조선인 지주층의 반환운동과 행정 내부자의 사례를 통하여, 군용지에 접근하는 조건이 식민지 사회 안에서 어떻게 갈렸는지 살펴본다.

1923년 9월 5일 조선총독부 경무국장은 「高警 第2745號」 ‘조선 군용토지 반환문제에 대한 운동에 관한 건’을 작성하여 내무대신과 경시총감, 육군차관 등에게 보고하였다. 수신처의 면면은 이른바 군용지 반환운동이 식민지 내부의 민원에 그치지 않고 일본 정계와 관료 집단, 군부가 함께 주시한 사안이었음을 보여준다.<sup>23)</sup>

이른바 ‘반환운동’의 중심에 선 인물은 이경선(李敬善)이었다. 자료는 그를 74세의 무직자로 적으면서, 과거 상당한 자산을 소유하였으나 실패를 거듭하여 몰락하였다고 기록하였다. 다만 이경선을 몰락한 인물로만 보기는 어렵다. 신용산 일대 지주들이 반환운동의 대리인으로 이경선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대한제국 궁내부(宮內府) 내장원(內藏院) 출신이라는 이력이 사회적 자산으로 작용한 결과였다. 과거 관료를 지낸 인물이라면 식민권력과 교섭할 통로를 열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깔려 있었다.

이경선은 일본인 유력자를 매개로 삼는 방법을 택하였다. 현직 대의사 하야카와 데쓰야(早川鐵冶)와 바나노식산주식회사의 미즈구치 효지로(水口兵次郎)를 통하여 교섭을 시도하였다. 양측이 맺은 계약의 핵심은 성공 보수 조항이었다. 반환이나 보상금 지급이 성사되면 미즈구치 측이 금액의 60%를 이경선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40%를 가져가기로 한 것이다. 식민권력 바깥의 조선인에게 군용지 문제의 통로는 쉽게 열리지 않았다.

이경선이 내세운 논리도 살필 필요가 있다. 이경선은 러일전쟁

23) 「朝鮮軍用土地返還問題に対する運動に関する件」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Ref.C03022628000, 密大日記 其16冊の内 第5冊 大正12年(防衛省防衛研究所). 이하 이경선의 군용지 반환운동에 관한 사실 관계는 해당 자료에 근거한다.

당시 토지 수용 절차의 허점을 문제 삼았다. 일본군은 수용 대가로 약 20만 엔을 대한제국 정부에 교부하였으나, 내부와 한성부는 이를 ‘관유지 소작인’에게 평당 약 7전씩 지급하는 데 그쳤다. 이경선은 지주와 소작인을 구분하였다. 평당 7전은 소작인에게 지급한 농작물 손실 보상금일 뿐, 토지 소유자인 지주에게 지급한 대가가 아니라는 주장이었다. 이 주장에 따르면 지주들은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였고, 지난 20년간의 조선 주둔 일본군 점유도 법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 된다.

이경선과 지주들이 논리를 앞세운 이유는 과거의 권리 회복에만 있지 않았다. 현 상태를 그대로 두면 지주들이 얻을 실익은 거의 없었다. 반면 반환이나 보상이 성사되면 중개자에게 40%를 내주더라도 일정한 이익을 확보할 수 있었다. 지주들의 계산은 손실 회피보다 기대 수익에 가까웠다. 일본인 중개자를 통한 교섭은 권리 회복의 시도인 동시에, 높은 수익을 노린 위험 부담의 선택이었다.

반환운동의 성격은 요구 내용에서 더 분명해진다. 이경선은 표면적으로 기(既) 수용지 전체에 대한 현재 시장 가격 수준의 배상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는 실질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요구였다. 사실상 목표는 유희(遊休) 군용지 약 8만 평의 대여권을 확보하는 데 있었다. 당시 용산 일대는 식민지 개발이 집중되어 토지 가격이 빠르게 오르고 있었다. 8만 평의 대여 권한은 장차 상당한 개발 이익으로 이어질 권리였다. 거액의 중개 수수료를 손실이 아니라 선행 비용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까닭이다.

이경선의 이후 행보는 제한적 접근 권한이 빚어내는 문제를 더 분명하게 드러낸다. 이경선은 단일 계약만으로 충분하다고 보지 않았다. 1923년 7월에는 조형식(趙亨植)을 통하여 전 총독부 통역관 와타나베 다카지로(渡辺鷹次郎)와 퇴역 육군 주계정(主計正)

미즈시마 도요사부로(水島豊三郎)에게도 접촉하였다. 미즈시마는 육군 내부 사정에 정통한 인물로 여겨졌고, 이경선은 미즈시마를 통하여 육군차관에게 닿는 비공식 통로를 확보하려 하였다. 문제는 미즈구치 측과의 기존 계약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는 데 있었다. 이경선은 기존 계약을 파기하였다고 알린 채 미즈시마 측과 다시 40% 성공 보수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미즈시마 측이 내건 독점 조항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고, 미즈시마는 이를 “배신적 행위”라고 비난하며 손을 떼었다. 육군성으로 이어질 경로가 끊기자 ‘반환운동’도 힘을 잃었다.

운동이 좌절된 뒤에도 이경선은 전의 계약을 무시하는 일이 있더라도 부득이하며 어떻게든 본래 뜻을 관철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다만 이경선의 이중 계약과 기망은 개인의 도덕성 문제로만 돌리기 어렵다. 식민지배 아래에서 조선인 지주가 군용지 문제에 개입하려면 일본인 중개자와 식민권력 내부의 인맥을 거처야 했고, 그러지 않고서는 실질적 교섭이 어려웠다. 이경선의 무리한 선택은 개인의 성향이 아니라 제한된 접근 통로가 빚어낸 결과로 읽을 수 있다.

물론 이경선의 운동을 접근의 제한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이경선은 몰락한 인물이었으나 내장원 출신이라는 경력과 지주층과의 연결망을 갖추고 있었다. 그러한 배경이 있었기에 40%의 수수료를 감수하면서도 8만 평의 개발 이권을 겨냥한 교섭에 나설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다수 소작농과 빈민에게는 애초에 허용되지 않은 선택지였다. 이경선의 실패는 조선인 지주층조차 식민지의 정보와 인맥에서 배제되어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식민권력과의 교섭이라는 문턱 앞이라도 설 수 있었던 쪽은 지주 계층뿐이었다.

이경선의 법적 논리가 딛고 선 전제에서는 또 다른 측면을 읽어

낼 수 있다. 이경선이 토지 대가가 아닌 농작물 보상금이라며 깎아내린 평당 7전은, 실제 경작자였던 소작인이 손에 쥔 거의 유일한 퇴거 비용이었다. 같은 7전이 지주에게는 소유권 회복과 이권 확보의 논거였던 반면, 소작인에게는 토지에서 밀려나며 받은 마지막 보상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같은 금액이 지주와 소작인에게 전혀 다른 의미를 지녔던 것으로 보인다.

지주들이 40%의 수수료를 내걸고 일본인 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동안, 소작인은 법적 논리와 교섭 통로 모두에서 배제되어 있었다. 소작인에게는 중개자를 고용할 자본도, 식민권력의 법적 문서 안에서 자신의 피해를 직접 제기할 위치도 없었다. 지주층의 반환운동에서 소작인은 보상금이 적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근거로만 언급되었을 뿐, 피해 당사자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이경선의 반환운동은 식민권력 바깥의 조선인이 군용지 문제에 접근하기가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였다.

접근의 어려움이 식민권력 바깥에 선 자의 문제였다면, 그 안에 자리 잡은 자에게 군용지 정보는 정반대의 의미를 지녔다. 식민권력 내부의 일본인 관료에게 군용지 정보는 사익을 추구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조선인 지주가 거액의 수수료를 감수하며 식민권력의 문턱을 넘으려 한 것과 달리, 행정 내부자는 예정지 정보에 먼저 접근할 수 있었다. 정보 접근의 차이는 투기와 선매수로 이어질 수 있었다. 다음으로 살펴볼 황해도 수안 연습장 사건이 그러한 구조를 잘 드러낸다.<sup>24)</sup>

1918년 조선 주둔 일본군은 수안 지역의 연습장 예정지 확보를 염두에 두고 황해도청 계통과 접촉하였다. 앞서 살핀 대로 조선 주둔 일본군은 곡산 연습장의 지리적 한계를 인식하고 있었고, 평

24) 「橫說豎說」, 『東亞日報』, 1921.04.02. 이하 이른바 ‘이토 시로’의 ‘수안 연습장 사건’은 해당 자료에 근거한다.

양과 곡산의 중간에 위치한 수안은 새로운 후보지로 적합하였다.

문제는 예산과 절차였다. 예산을 확보하기 전에 후보지를 확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보가 새어 나가 지가가 오르는 위험은 피하기 어려웠다. 조선 주둔 일본군은 지가 상승을 통제할 법적 수단을 갖추지 못하였다. 결국 황해도 당국과 비공식으로 협의하는 길을 택하였다. 교섭 대상은 당시 황해도 경무부장 이토 시로(伊東四郎)였다. 이토 시로는 헌병 장교로 경력을 쌓은 뒤 조선에 건너와 전라북도를 거쳐 1918년 황해도 경무부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다.<sup>25)</sup>

조선 주둔 일본군의 요청은 예정지가 타인에게 매각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는 것이었다. 토지 거래는 사적 영역에 속하였으므로 경무부장이 거래를 공식적으로 억제하기는 어려웠다. 그럼에도 경무부장에게 협조를 요청한 까닭은, 경무부장이 지역 행정과 치안망을 통하여 예정지 거래를 사실상 억제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군은 군사적 필요를 위하여 지방 행정 권력의 비공식적 영향력에 기대려 하였다.

그러나 1921년 군사령부가 매입 절차에 들어갔을 때, 해당 토지

25) 이토 시로의 이력은 두 자료로 확인된다. 먼저 한국사데이터베이스 근현대인물 자료에 따르면 그는 1876년 12월 20일 東京府 豊多摩郡 千駄ヶ谷町에서 태어났다. 1899년 보병소위로 임관하여 같은 해 11월 중위로 진급하였고, 1902년 3월 헌병중위로 제1헌병대에 배치되었다. 1905년 1월 헌병대위로 진급한 뒤 일본 각지에서 분대장을 지냈으며, 1912년 4월 육군소좌로 센다이(仙台) 헌병대장에 임명되었다. 약 1년 3개월 뒤 조선으로 건너와 전주 헌병대장 겸 전라북도 경무부장으로 재직하였다.

1918년판 『人事興信錄』에도 같은 생년월일의 인물이 등재되어 있다. 1899년 6월 육군보병소위로 임관하여 1905년 헌병과로 전임하였고, 1912년 4월 헌병소좌가 되었으며, 1913년 7월 조선 해주 헌병대장, 8월 황해도 경무부장에 임명되었다는 기록이다. 생년월일과 임관 연도, 헌병과 경력, 1912년 4월의 소좌 진급이 모두 일치하므로 두 자료의 인물은 같은 사람으로 볼 수 있다. 헌병과 전임시점과 부임지가 어긋나는 것은 두 자료의 기재 기준이 달랐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두 자료를 함께 놓으면 이토 시로는 헌병 장교로 경력을 쌓은 뒤 조선에 건너와 도 경무부장을 역임한 인물이었다. 전라북도를 거쳐 1918년 황해도 경무부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는 이미 매매와 등기가 끝나 있었다. 소유자는 이토 시로였다. 매각 억제를 요청받은 이토 시로가 그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이용하여 예정지를 먼저 사들인 것이다. 조선 주둔 일본군이 기대한 행정적 협조는 예정지 확보의 수단으로 작동하지 않았고, 도리어 행정 내부자가 정보를 선점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거래를 통제하려고 택한 비공식 경로가 핵심 정보를 특정 개인에게 몰아주는 통로로 바뀌었다.

선매수와 등기 완료는 가격 교섭에서도 이토 시로에게 유리한 위치를 마련해 주었다. 조선 주둔 일본군이 예정지를 확보하려면 결국 소유자가 된 이토 시로와 가격을 교섭해야 했기 때문이다. 다만 군사령부가 사실을 확인한 뒤 크게 분개하며 상응하는 조치를 검토하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는 만큼, 선매수가 군의 묵인 아래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당대 언론은 수안 사건을 개인의 일탈로만 보지 않았다. 『東亞日報』는 수안 사건을 1910년대 헌병정치 전반의 문제와 연결하였다. 헌병경찰 제도를 ‘치안 유지’의 유일한 보루처럼 내세우는 시각을 비판하면서, 수안 사건을 헌병정치의 실상을 보여주는 사례로 제시한 것이다. 치안 유지를 명분으로 정당화되어 온 권력이 실제로는 정보 독점과 사익 추구의 토대로 작동하였다는 지적이었다.<sup>26)</sup>

앞에서 본 이경선의 반환운동과 수안 사건을 함께 놓으면, 군용지 문제를 둘러싼 접근 조건의 차이를 읽어낼 수 있다. 이경선은 내장원 관료 출신이라는 이력과 지주층과의 연결망을 갖추고 있었다. 그럼에도 식민지 행정체계 바깥의 인물이었던 탓에 일본인 중개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중개 수수료와 이중 계약의 위험을 감수하다가 좌절하였다. 반면 행정 내부에 자리한 이토 시로는 예정지 정보를 먼저 손에 넣었고, 그 정보를 곧바로 선매수

26) 「橫說豎說」, 『東亞日報』, 1921.04.02. 해당 비판 보도도 같은 자료에 근거한다.

의 기회로 바꾸었다. 앞서 살핀 여의도 군용지 매수 과정의 아라 이 하츠타로 사례까지 더하면, 군용지를 둘러싼 정보와 법이 모든 사람에게 같은 방식으로 주어지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법은 어떤 이에게는 재산권을 빼앗는 강제 수단이었고, 다른 이에게는 교섭하고 우회할 수 있는 행정 절차였다. 제도가 조선인을 명시적으로 배제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정보의 편중과 법 적용의 차등은 조선인 지주를 위협한 교섭과 투기의 문턱 앞에 세웠고, 원주민과 소작농은 그 문턱 바깥으로 밀어냈다. 누가 먼저 정보에 닿느냐의 차이가 지역사회 내부의 계층을 갈라놓는 중요한 조건이었다.

#### 나. 위임 관리와 소작인 계층에 대한 중간 수탈

조선 주둔 일본군은 넓은 군용지를 보유하였으나, 군용지를 직접 관리할 행정력은 충분하지 않았다. 군이 중시한 것은 관리 비용을 줄이고 세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일이었다. 소작인 선정과 임대료 징수 같은 실무는 지방 행정기관이나 지역 유력자에게 넘기는 경우가 많았다. 편의적인 방식이었다. 그러나 지역 주민에게는 위임이 새로운 중간 수탈의 통로가 되었다. 군의 감독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는 관리 권한을 넘겨받은 대리인이 권한을 사적으로 행사하였고, 소작권과 임대료를 둘러싼 부정이 빈번하였다.

군은 관리 실무를 직접 담당하지 않았고, 갈등의 조정과 통제는 지방 행정과 대리인의 몫이 되었다. 군용지 운영의 명목은 유지되었으나, 현장에는 조선 주둔 일본군의 권위만 남고 책임의 소재는 분명하지 않았다. 위임 관리의 구조는 경상남도 창녕군 대합면과 평안남도 용강군 해운면·서화면에서 뚜렷한 모순을 낳았다.

먼저 창녕 연습장의 사례를 살펴본다. 2장에서 검토한 대로 조선 주둔 일본군의 기록은 창녕 연습장 부지의 매수 과정을 비교적

‘월만’하게 정리하였다. 그러나 당대 신문과 관련 기록을 함께 보면 실제 상황은 전혀 달랐다. 창녕군 대합면 일대 약 1,000정보, 곧 약 300만 평의 토지가 군용지로 편입되었다. 편입된 땅은 빈 공간이 아니라 수천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경작하던 곳이었다. 총독부는 조선 주둔 일본군이 공식적으로 전면에 나서기 전인 1917년부터 대합면 일대를 낮은 값에 강제로 매수하며 주민을 밀어내고 있었다. 창녕 연습장 부지는 조선 주둔 일본군이 직접 매수한 것이 아니라, 총독부가 먼저 확보한 국유지가 나중에 군으로 넘어간 경우였다.<sup>27)</sup> 창녕에서 주민을 축출한 주체는 군이 아니라 매수를 집행한 총독부였다.

피해 규모는 적지 않았다. 매수 대상지 약 1,578정보에 거주하던 700여 호, 약 4,000명이 축출될 위기에 놓였다. 주민들은 “집 없고 농사지를 땅이 없어 길가에서 울고 들에서 해매이는” 처지에 내몰렸다. 별도의 이주 보상비도 마련하지 않은 채 총독부는 매수 절차만 기계적으로 집행하였다. 군용지 확보는 곧 지역 공동체의 해체였다.

피해가 커지자 창녕군수 강성희(姜星熙)가 중재에 나서 조선 주둔 일본군과 협의하였다. 그 결과 1923년 조선 주둔 일본군은 전체 군용지 가운데 당장 연습장으로 쓰지 않는 유휴지 약 700정보, 약 210만 평을 남겨 거주민에게 다시 임대하였다. 제20사단장은 1923년 1월 현지를 직접 살핀 뒤 주민에게 소작권을 주고 소작료를 매수 원가의 5%로 정하도록 하였다.<sup>28)</sup> 축출된 주민을 다시 받아들이는 조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군용지 전체를 직접 관리하는 대신 일부를 임대하여 관리 비용을 줄이면서 세입을 유지하려는 방안이었다.

27) 「郡守의 恠異한 態度와 漲天한 郡民의 怨聲」, 『東亞日報』, 1925.08.23.

28) 「軍用地를 小作식혀 군사령부에서 조사 후」, 『東亞日報』, 1923.01.25.; 「軍用地의 小作料」, 『朝鮮日報』, 1923.02.15.

주민들은 일부나마 경작지를 다시 얻은 뒤 ‘창녕 군용지 소작조합’을 조직하였다.<sup>29)</sup> 소작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운영을 효율화한다는 것이 조합의 명분이었다. 명분과 달리 조합을 실제로 움직인 것은 지방 행정 권력이었다. 조선 주둔 일본군이 관리 권한을 중간 관리자에게 넘겨 둔 자리에서, 소작조합은 소작인의 자치 조직이 아니라 대리인이 권한을 남용하는 공간으로 바뀌었다.

조합의 지휘 체계는 모순을 가장 뚜렷하게 드러냈다. 조합은 창녕군청의 감독을 받았는데, 조합장은 대합면장 하도윤(河道允)이 겸임하였다. 행정 권력을 쥔 면장이 소작조합의 수장까지 맡으면서, 감독하는 쪽과 감독받는 쪽이 사실상 한 사람으로 겹쳤다. 견제가 작동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하도윤은 서기 김성수(金成洙)와 결탁하여 소작권을 사적으로 다시 나누었다. 기존 연고자의 소작권을 회수하여 친인척과 측근에게 넘겼고, 소작권의 유지는 금품과 인맥에 따라 갈렸다. 드러난 사실만 보아도 하도윤은 재임 기간에 기존 연고자 약 700호를 밀어내고 측근 260여 호에게 소작권을 넘겼다. 특히 상등 토지와 조선 주둔 일본군이 새로 개방한 유흥지 300여 두락은 소작조합 이사와 면서기, 면장의 친척에게 집중되었다.

1925년 4월 소작인들은 집단으로 반발하였다. 500여 명이 連署한 탄원서를 제출하여 하도윤의 부정을 고발하였고, 소작인 대표 이병수(李炳壽)는 부당하게 회수된 소작권이 수만 평에 이르며 뇌물 액수는 헤아리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행정 당국은 소작인의 진술보다 면장의 해명을 더 믿었고, 조사도 형식적으로 끝났다. 창녕군수는 생존권을 요구하는 소작인을 두고 “주의에 물들었다”고 몰아세우며 민원을 정치 문제로 돌리려 하였다.

1925년 6월 하도윤의 조합장 임기가 끝나고, 조합원 1,000여

29) 「郡守의 恠異한 態도와 漲天한 郡民의 怨聲」, 『東亞日報』, 1925.08.23.

명이 참여한 선거에서 하도윤이 낙선하고 최승교(崔承敎)가 새 조합장으로 선출되었다. 부패한 운영에 대한 소작인의 분명한 거부이자, 소작인들이 스스로 조합을 운영할 의지와 능력을 갖추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문제는 그다음이었다. 조합의 정상화를 가로막은 것은 행정 권력이었다. 규약상 조합의 실무를 맡을 이사와 서기는 군수의 추천을 거쳐 임명되어야 했는데, 새 군수 이장희(李章熙)가 추천권 행사를 거부하였다. 그 결과 소작조합은 최승교 조합장 한 사람만 남아 집행부를 꾸리지 못하였고, 조직은 사실상 마비되었다.<sup>30)</sup>

행정 공백이 생기자 소작료 납부도 지연되었다. 창녕군은 납부지연을 소작인의 고의적 체납으로 바꾸어 조선 주둔 일본군에 보고하였다. 소작조합을 문제 집단으로 몰아 군의 개입을 끌어내려는 것으로, 조직 자체를 해체하려는 의도였다고 볼 수 있다.<sup>31)</sup> 한편, 조사에서는 하도윤의 부정 9건과 김성수의 부정 6건이 확인되었다. 경작지를 ‘군사 출입 금지 구역’이라 속여 기존 소작인을 내쫓은 뒤 측근에게 넘긴 사례가 드러났다.

1925년 8월 19일 제20사단은 경리부장을 참석시켜 최종 처분을 내렸다. 소작인들은 조선 주둔 일본군이 공정한 중재자가 되리라 기대하였으나, 군이 택한 것은 조정이 아니라 통제였다. 경리부장은 소작인의 탄원을 민중운동이자 개인의 선동이라고 규정하였다.<sup>32)</sup> 나아가 이장희 군수는 조합 관리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소작조합의 해산을 선언하고, 쟁의를 이끈 임자규(林子葵) 등 4명의 소작권을 박탈하여 본보기로 삼았다. 조합이 강제로 해체되면서 운영은 군수 직할로 바뀌었고, 소작인 대표 자리에는 면장에게 포섭된 인물이 들어섰다. 조합 간부가 군수를 두고 “원수”라 부른 까

30) 「郡守의 恠異한 態度와 漲天한 郡民의 怨聲」, 『東亞日報』, 1925.08.23.

31) 「軍用地耕作問題로 五百名連署歎願」, 『朝鮮日報』, 1925.06.06.

32) 「民聲에 絶對向背하야 組合을無理로 解散」, 『東亞日報』, 1925.08.24.

답이 여기에 있었다.

조선 주둔 일본군 경리부장은 사태를 전반적으로 알고 있었으나, 군수와 면장의 인사와 감독은 군의 권한이 아니었다. 경리부장이 택한 것은 1년 동안 군수에게 관리를 맡기고 문제가 되풀이 되면 직영을 검토한다는 방침이었다. 조선 주둔 일본군에게 중요한 것은 소작인의 생존권이나 분쟁의 공정한 해결이 아니라, 갈등을 빨리 정리하고 세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일이었다.

창녕 사례에서 조선 주둔 일본군은 문제를 일으킨 군수와 면장의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따지지 않고, 오히려 피해를 제기한 소작인들의 자치 조직을 해산하는 쪽을 택하였다. 군용지를 둘러싼 권한은 소유권이 총독부, 이용·관리·수익권이 조선 주둔 일본군, 실무 집행이 군청과 면에 나뉘어 있었다. 군 경리부가 행사한 권한은 소작료율의 결정과 분쟁의 최종 처분에 한정되었고, 조합 간부의 임명과 감독은 군수의 추천권에 속하였다. 소작권의 사유화와 중간 수탈은 권한이 분산된 자리에서 일어났다.

창녕 사례가 행정 권력을 매개로 소작권이 사적으로 재편된 양상이었다면, 평안남도 용강군 해운면 사례는 같은 위임 관리가 더 직접적인 금전 착취로 이어진 경우였다. 창녕에서 대리인이 소작권을 나누어 가졌다면, 해운면에서는 대리인이 소작료를 가로챘다. 조선 주둔 일본군이 관리 비용을 줄이려고 택한 위임 방식은, 정보의 비대칭 아래에서 조직적인 사기의 수단으로 바뀌었다.

해운면 사건의 출발점도 생계 기반의 박탈이었다. 용강군 해운면과 서화면 일대의 잡종지 약 100만 평은 본래 사유지였으나 국권피탈 전후에 국유지로 편입된 토지였다. 주민들은 평안남도 도청을 통하여 토지를 불하받기로 하고 1921년부터 약 4년 동안 대금을 분할 납부하고 있었다. 그런데 1925년 봄 조선 주둔 일본군이 그 가운데 20만 평을 군용지로 전환하기로 결정하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기존 불하 계약은 일방적으로 해지되었고, 주민들은 하루아침에 토지를 잃을 처지에 놓였다. 행정 당국에 진정하였으나 군용지 전환은 번복할 수 없다는 답만 돌아왔다.<sup>33)</sup> 주민 다수는 초지(草地)에서 목축과 경작을 병행하던 사람들이었다. 갑작스러운 퇴거는 생존을 위협하였다. 1925년 11월 하순 주민들은 김태웅(金泰熊)과 김창윤(金昌潤)을 대표로 세워, 군용지 안에서라도 소작을 이어갈 수 있게 해 달라고 청원하였다. 조선 주둔 일본군 경리부와 직접 교섭한 끝에 주민들은 두 가지 약속을 받아냈다. 기존 연고자에게 소작권을 우선 준다는 것과, 해운면과 서화면 전체의 소작료를 총 200원 이내로 책정한다는 것이었다.<sup>34)</sup>

문제는 합의를 집행하는 단계에서 불거졌다. 해운면장 한희성(韓熙聖)과 서화면장 송태묵(宋泰默)이 끼어들어 합의 내용을 바꾸어 놓았다. 두 면장은 자신들이 소작인 대표인 것처럼 행세하며 육군 측과 별도의 계약을 맺었고, 그 계약에서 확정된 소작료는 해운면 42원과 서화면 48원, 합계 90원에 그쳤다.

착취는 그 다음이었다. 면장들은 계약 내용을 숨긴 채, 육군이 요구한 소작료가 해운면 1,200원과 서화면 1,800원, 합계 3,000원이라고 주민들에게 알렸다. 실제 육군 납부액의 30배가 넘는 금액을 중간에서 거두어들여 한 것이다. 두 면장은 육군의 이름과 권위를 앞세워 금액을 강요하였다. 면장만 실제 계약을 알고 주민은 몰랐던 탓에 착취가 가능하였다.

그러나 소작인들이 직접 조사한 끝에 실제 계약 내용이 드러났다. 주민들은 중간 수탈을 거부하고 육군과 처음 합의한 수준의

33) 용강군 일대의 군용지 전환은 일본육군 항공부대의 폭격 연습장 확보와 맞물려 있었다. 이민성, 「1920년대 조선 주둔 일본군 항공부대 설치와 지역사회」, 『한국 독립운동사연구』 83,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23 참조.

34) 「龍岡軍用地問題로 總督府에 또 陳情」, 『東亞日報』, 1925.08.20.; 「小作料詐欺問題로 軍用地小作人奮起」, 『朝鮮日報』, 1926.05.04.

소작료를 경리부에 직접 보내려 하였다. 그럼에도 육군 경리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계약 명의자가 소작인이 아니라 면장으로 되어 있으므로 계약 당사자가 아닌 주민의 돈은 받을 수 없다는, 형식적인 이유에서였다.

조선 주둔 일본군 당국이 중시한 것은 소작료 징수의 공정성이 아니라 계약 형식의 유지였다. 군은 계약 상대로 승인한 면장을 통해서만 사무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였고, 그 결과 현장의 부당한 착취는 어느 기관의 소관에도 들지 않았다. 주민이 보낸 돈을 돌려보낸 조치는 면장의 기망을 행정적으로 떠받치는 결과를 낳았다.

1926년 해운면 소작조합은 임시총회를 열어 면장 한희성을 추궁하였다. 압박을 견디지 못한 한희성은 전말을 자백하였다. 한희성은 개인이 착복한 것이 아니라 용강군청이 면 기본금을 조성하라고 지시한 탓에 부득이 징수하였다고 답하였다. 실제로 착취한 소작료의 일부가 해운면 경비로 납부된 사실도 확인되었다. 중간 수탈은 개인의 일탈에 그치지 않고 지방 행정기관의 운영과 맞닿아 있었다. 조선 주둔 일본군이 위임한 징수 권한이 지방 재정의 빈틈을 메우는 수단으로 악용되었다.

사태를 바로잡기 위하여 김태웅과 김창윤 등 진정위원 3인은 상경하여 조선총독부와 조선 주둔 일본군 경리부를 찾아갔다.<sup>35)</sup> 1926년 5월 진정위원들은 평안남도 도지사와 경리부 副主計 호리구치(堀口喜三郎)를 면담하였다. 호리구치와 도지사는 면장들이 중간에서 부정을 저지른 줄 몰랐다고 입을 모았다. 면장을 소작인 대표로 기재한 것도 행정상의 편의였을 뿐 부정을 의도한 것은 아니며, 진상을 조사하여 해결하겠다는 약속도 덧붙였다. 진정위원들은 해명을 받아들이고, 용강군 당국의 독단적 처리가 문제의

35) 「小作料詐欺問題로 軍用地小作人奮起」, 『朝鮮日報』, 1926.05.04.

직접 원인이라며 귀향하였다.<sup>36)</sup>

그러나 군과 도청의 “몰랐다”는 해명은 책임을 면할 근거가 되지 못하였다. 면장을 소작인 대표로 기재한 것은 도청과 군청의 행정 편의였고, 군 경리부는 그 명의를 승인한 뒤 계약 형식만을 지켰다. 명의자가 아닌 주민의 납부를 거부한 조치는 면장의 기망을 행정적으로 떠받치는 결과를 낳았다. 문제의 틈은 특정 기관의 무관심에서 생긴 것이 아니었다. 매수는 총독부가, 관리와 수익은 군이, 징수는 면이 담당하는 구조에서 어느 기관도 소작인의 권리를 확인할 책임을 지지 않았다. 군용지 운용에서 각 기관의 행정 원칙은 소관 사무의 형식을 지키는 방향으로 작동하였고,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작동하지 않았다.

#### 다. 유희 군용지 처분과 기층민의 축출

군용지 관리 단계에서 드러난 모순과 수탈은, 군사적 효용이 약해진 토지를 처분하는 단계에서 더 뚜렷해졌다. 조선 주둔 일본군과 총독부는 긴요하지 않게 된 군용지를 본래 소유주에게 돌려주지 않았다. 대신 일본 자본에 불하하거나 군수 시설 부지로 돌렸다. 평안남도 평천리 사례는 군용지가 군사 공간에서 수익의 대상으로 바뀌고, 그 과정에서 기존 주민이 밀려나는 실태를 보여준다.

1920년대 전후로 총독부와 조선 주둔 일본군 사이에서 유희 군용지의 처분 논의가 본격화되자, 평안남도 대동군 고평면 평천리 일대 약 23만 평의 군용지가 일본인 회사에 매각된다는 소식이 퍼지기 시작하였다. 평천리에는 다수의 농민이 거주하며 사단 경리부 평양출장소에 소작료를 내고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다.<sup>37)</sup> 군용

36) 「龍岡郡當局의 處事 道나 陸軍側도 驚愕」, 『朝鮮日報』, 1926.05.16.

37) 「日露戰爭에 沒收된」, 『東亞日報』, 1922.10.31.

지 매각은 주민에게 소작권 상실과 생활 기반의 붕괴를 뜻하였다.

주민들의 불안에는 1904년의 기억이 있었다. 러일전쟁 당시 일본군은 평양에 진입하자마자 평천리 일대 토지 100만 평을 징발하였고, 대한제국 정부와 박중양(朴重陽)이 여기에 협조하였다. 항의에 나선 지주 100여 명은 투옥되었다가, 토지 대가가 아닌 작물 손실 보상금 명목으로 평당 7전을 받고서야 풀려났다. 헌병대가 지주들을 가혹하게 다루었다는 기억, 저항한 지주의 이마에 화인(火印)을 찍었다는 증언도 지역에 전해졌다.<sup>38)</sup> 평천리 주민들이 군용지 문제를 한낱 행정 사안으로 여기지 않은 데에는 이 내력이 있었다.

같은 평천리 군용지를 두고 주민과 지주의 인식은 식민 당국과 정면으로 갈렸다. 주민과 지주에게 그 땅은 1904년에 강압으로 빼앗긴 토지였던 반면, 식민 당국은 이미 정당하게 수용을 마친 토지로 여겼다. 평천리 군용지 문제의 핵심은 1920년대 매각 결정이 아니라, 1904년의 강제 점유가 재검토 없이 제도로 굳어진 데 있었다. 처분 논의가 다시 불거졌을 때 주민들이 주목한 것도 이주 대책이 아니라 과거 수용의 폭력성이었다.

처분 방침이 기정사실로 굳어지자 주민들은 본격적으로 맞섰다. 먼저 소작인 100여 명이 탄원서를 내어 불안과 공포를 호소하면서, 매각이 불가피하다면 차라리 자신들에게 우선 불하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돌아온 것은 거부였다. 평안남도 재무부장 다테 요츠오(伊達四雄)는 주민들의 불안을 근거 없는 유언비어로 일축하였고, 지주들의 반환 요구에는 토지를 징발하거나 대여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과거의 강제 수용마저 부정하였다.

당국이 목살로 일관하자 저항은 조직의 형태를 띠었다. 소작인

38) 「大同郡軍用地事件 人民이 自由耕作을 하겠다고 도령 회계과에 데의 경위 업시 환부 안하는 총독부」, 『朝鮮日報』, 1925.04.08.

300명은 1924년 6월 3일 명촌 예배당에 모여 최중업(崔重業)을 조합장으로 하는 군용지 소작조합을 결성하였다. 지주들의 대응은 더 강경하였다. 1925년 2월 28일 지주 대표 김세진(金世鎭) 등이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주가 직접 경작하겠다는 최후통첩을 평안남도 당국에 보냈고, 4월에는 관계자 30여 명이 도청 회계과로 몰려가 항의하였다. 회계과장 요시다(吉田)의 답은 육군성과의 협의가 끝나지 않아 반환도 매매도 논할 단계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매각 결정은 육군성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었고, 도 당국이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의미였다. 주민을 달래는 듯한 답변이었으나, 실제로는 시간을 끌며 저항의 기세를 꺾으려는 것이었다.

언론도 평천리 문제를 주목하였다. 『朝鮮日報』는 사설에서 평천리 토지 수용이 사실상 강매였다고 지적하며, 상업적 처분이 아니라 정치적 책임의 차원에서 기존 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우선 매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39)</sup>

그러나 실제로 식민 당국은 지역 주민이 아니라 일본 자본 쪽으로 기울어 있었다. 평안남도 당국은 평천리 군용지를 대구의 자본 야마구미(山十組)에 평당 53전으로 매각하기로 물밑에서 정해둔 상태였다. 1904년 작물 보상금 평당 7전만 주고 강제로 수용한 토지를 1925년 평당 53전에 일본 기업에 넘겼다. 식민권력은 상당한 차익을 거두었고, 일본 자본은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산업용 부지를 확보하였다.<sup>40)</sup> 당국은 매각을 지역 ‘발전’으로 포장하였으나, ‘발전’의 수혜자는 외부에서 들어온 일본 산업 자본이었다.

39) 「日露戰爭에 沒收된」, 『東亞日報』, 1922.10.31.; 「大同郡民의 陳情」, 『東亞日報』, 1922.10.07.; 「軍用地拂下와 民怨」, 『朝鮮日報』, 1923.07.19.; 「軍用地에 對하여」, 『朝鮮日報』, 1924.05.26.; 「小作人組合創立」, 『朝鮮日報』, 1924.06.12.; 「小作組合組織 軍用地小作人이」, 『東亞日報』, 1924.06.24.

40) 「緣故者 만흔 軍用地를 日本人個人에 賣下」, 『東亞日報』, 1925.06.22.

야마주구미에 넘어간 부지를 빼면, 나머지 구역은 육군병기제조소 부지로 정리되었다. 그곳에 살던 100여 호, 1,000여 명에게 떨어진 것은 퇴거 명령이었다. 보상 기준은 한층 가혹하였다. 1904년 수용 당시부터 그 땅에 거주한 70여 호만 이주비를 받았고, 그 뒤에 들어온 빈민 다수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보상에서 밀려났다.

여기서 법 적용의 차등이 드러난다. 지가가 크게 오른 곡산 연습장에서도 매수 때에는 「토지수용령」에 따라 일정한 보상 절차를 밟았던 반면, 평천리의 빈민에게는 최소한의 법적 절차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법의 보호를 받은 쪽이 있었는가 하면, 법률상 논의의 대상에도 들지 못한 쪽이 있었다. 주민 다수에게 남은 것은 퇴거 명령뿐이었다. 당국이 끝내 철거를 강행하려 하자 제20사단이 농업학교 뒤편의 황무지를 대체 부지로 내놓았지만, 식수조차 제대로 나지 않는 땅이었다. 주민들이 이주와 생계를 호소하여도 조선 주둔 일본군과 행정 당국은 냉담할 뿐이었다.<sup>41)</sup>

평천리 군용지의 변화는 1904년의 군사적 점유가 1920년대 식민지 자본 축적의 통로로 바뀌는 과정이었다. 조선 주둔 일본군과 총독부에게 평천리는 더 이상 지켜야 할 군사 공간이 아니었다. 일본 자본에 불하하든 병기 생산 시설 부지로 돌리든, 형편에 따라 처분할 수 있는 행정 자산에 가까웠다. 그 전환에서 가장 먼저 밀려난 쪽은 법적 보호가 취약한 기층 주민이었다. 아무 기반도 없는 황무지로 내몰린 평천리 주민의 처지가, 개발과 ‘안보’를 명분으로 군용지가 일본 자본의 수익 대상이 되는 과정과 그 바탕의 희생을 분명하게 드러낸다.

이상에서 군용지의 접근과 관리, 처분이라는 세 국면을 통하여

41) 「軍用地退去令으로 千餘名住民恐慌」, 『東亞日報』, 1927.05.16.; 「三百戶에 撤去命令 千餘住民所向無處」, 『東亞日報』, 1928.07.14.

같은 제도가 지역사회 내부의 계층에 따라 어떻게 다른 결과를 낳았는지 살펴보았다. 세 국면을 관통하는 것은 군용지를 둘러싼 위계였다.

접근의 국면에서, 반환과 불하에 관한 정보는 식민권력 내부에 집중되었다. 행정 안에 자리한 이토 시로는 예정지 정보를 선점하여 토지를 사들였고, 바깥의 이경선은 거액의 수수료를 무릅쓰고 일본인 중개자에게 의존하다가 좌절하였다. 관리의 국면에서, 조선 주둔 일본군은 비용을 줄이려 실무를 대리인에게 위임하였고, 권한이 분산된 자리에서 창녕의 면장은 소작권을 사유화하고 용강의 면장은 소작료를 가로챘다. 처분의 국면에서, 군사적 효용이 약해진 평천리의 기존 군용지는 일본 자본에 넘어가거나 병기 시설 부지로 돌려졌고, 기존 주민은 보상조차 받지 못한 채 밀려났다.

세 국면은 모두 한 가지 사실을 가리킨다. 군용지를 둘러싼 제도는 형식적으로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었으나, 실제로는 정보와 권한, 법의 보호가 계층에 따라 차등 있게 주어졌다. 일본인 내부자와 자본은 정보를 선점하고 차익을 얻었으며, 조선인 지주층은 위험한 교섭의 문턱 앞에 섰고, 소작농과 기층 주민은 그 문턱 바깥에서 생활 기반을 잃었다. 군용지의 운용은 단순히 군사 공간을 확보하고 관리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군용지 운용은 지역사회 내부의 계층별 차등을 드러내고, 또 그 차등을 더욱 굳히는 과정이었다.

## 4. 결론

본 글은 「군용지 정리에 관한 협정」과 「군용지대부규정」이라는 제도적 기반 위에서 이루어진 조선 주둔 일본군의 군용지 운용 실

태와 지역사회의 계층별 대응을 검토하였다.

2장에서는 군사연습장의 확보 계획과 설비 과정을 살펴보았다. 상주 사단 체제를 확립하려는 조선 주둔 일본군에게 연습장 확보는 부대 주둔지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과제였다. 조선 주둔 일본군은 협정의 자산 교환 구조를 통해 저비용으로 대규모 연습장을 확보하려 하였으나, 매수를 집행한 것은 총독부였고 실제 설비는 예산·지가·자산 교환 조건에 제약되었다. 여의도와 창녕은 계획을 웃돌았으나, 평강·곡산·정평은 계획에 미치지 못하였고, 「토지수용령」의 적용도 상대가 식민권력과 맺은 관계에 따라 갈렸다. 그렇게 확보된 공간은 조선 주둔 일본군에게 만주 침략 훈련의 장소였지만, 주민에게는 생활 기반을 잃는 공간이었다.

3장에서는 군용지 접근과 위임 관리, 유희지 처분의 세 국면에서 지역사회 내부의 차등을 검토하였다. 접근에서는 정보가, 관리에서는 대리인의 권한이, 처분에서는 법적 보호가 계층에 따라 갈렸다. 세 국면을 관통한 조건은 권한의 분산이었다. 매수와 강제 수용은 총독부, 이용과 수익은 군, 징수와 소작인 선정은 면이 담당하였고, 지역사회의 각 계층은 서로 다른 층위를 상대하였다.

종합하면, 군용지 운용은 군사 공간을 확보하고 관리하는 절차에 머물지 않았다. 조선 주둔 일본군의 요구를 총독부가 집행하고 지방 행정기관이 실무를 담당하는 구조에서 토지가 취득·관리·처분되었고, 그 과정에서 군은 지역사회의 여러 계층과 마주하였다. 토지 매수와 임대차라는 두 접점은 모두 군의 군사적 필요가 지역사회의 생활 기반과 충돌하는 자리였다. 그 충돌은 조선인과 일본인을 가르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 내부에서 지주와 소작농, 유력자와 빈민을 갈라놓았다. 식민지 조선에서 군용지 운용은 군사적 식민지배의 공간적 토대를 구축하는 동시에, 그 토대 위에서 지역사회의 계층적 차등을 강화하는 과정이었다.

## 〈참고문헌〉

### 1. 사료

『東亞日報』·『朝鮮日報』

『龍山軍用地管理換關係書類』, CJA0003979.

「富平附近小演習場敷地買収の件」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Ref.C03011787500、永存書類乙集第2類第1冊 大正12年(防衛省防衛研究所).

「国有地管理換受の件」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Ref.C03011927100、永存書類乙集第2類第2冊 大正13年(防衛省防衛研究所).

「平康陸軍飛行機着陸場買収の件」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Ref.C03011931400、永存書類乙集第2類第2冊 大正13年(防衛省防衛研究所)

「陸軍演習場規則中改正の件達」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Ref.C02030612700、自大正14年01月 至昭和02年12月 「陸普綴 第1部」(防衛省防衛研究所)

「朝鮮軍用土地返還問題に対する運動に関する件」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Ref.C03022628000、密大日記 其1 6冊の内 第5冊 大正12年(防衛省防衛研究所).

朝鮮軍經理部, 『朝鮮師團營舎建築史』, 1923

歩兵第七十九聯隊史編集委員会 編者, 『歩兵第七十九聯隊史』, 歩兵第七十九聯隊史編集委員会, 1984.

### 2. 단행본

남용협, 『朝鮮半島における旧日本軍の駐屯地設定と都市形成に関する研究1900年前後のソウルを中心にして』, 名古屋大学大学院環境学研究科 博士論文, 2022.

### 3. 논문

- 김명수, 「재조일본인 토목청부업자 아라이 하츠타로(荒井初太郎)의 한국진출과 기업활동」, 『경영사학』 26, 2011.
- 이민성, 「1928년 식민지 조선 ‘병비충실’ 운동의 추이와 성격」, 『한국문화』 97,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22.
- 이민성, 「1920년대 조선 주둔 일본군 항공부대 설치와 지역사회」, 『한국독립운동사연구』 83,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23.
- 이민성, 「조선 주둔 일본군의 군용지 확보와 관리제도 구축」, 『송실사학』 56, 송실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2026.

〈Abstract〉

## Military Land Management of the Japanese Army Stationed in Colonial Korea and the Class-based Responses of Local Society

Lee, Min-seong

This article examines how the Japanese Army stationed in Colonial Korea managed its military land under two institutional frameworks—the Agreement on the Reorganization of Military Land (1915) and the Regulations on the Lease of Military Land (1916)—and how the various classes of local society responded.

Although these frameworks placed legal ownership of military land with the Government-General of Chosŏn, they granted the Army the rights of use, management, and revenue, along with a mechanism for exchanging land assets. The Army thus encountered local society at two points of contact: the purchase of land and the relationship of lease. The purchase itself, however, was executed and funded by the Government-General at the Army's request.

In acquiring military training grounds, the framework did not operate uniformly even for the Army itself. While Yŏūdo and Changnyŏng exceeded their targets, P'yŏnggang, Koksang, and Chŏngp'yŏng fell short of theirs, with Koksang securing less than a quarter of its planned area. The Government-General invoked the Land Expropriation Ordinance against ordinary

landlords while withholding it from a resident Japanese capitalist. The Army was constrained by budget, land prices, and the terms of asset exchange.

Across the three phases of access, management, and disposal, the same framework produced different outcomes according to class. Authority was divided among institutions at every phase: expropriation lay with the Government-General, use and revenue with the Army, and rent collection with township officials. Access to information and legal protection was distributed unequally along positions where ethnicity and class overlapped. Japanese officials and capital within the colonial power secured information in advance and reaped profits; Korean landlords stood at the threshold of risky negotiations mediated by Japanese brokers; and tenant farmers and the lower strata were pushed beyond that threshold, losing their means of livelihood.

The management of military land in Colonial Korea was at once a process of building the spatial foundation of military colonial rule and a process of dividing local society along lines of class upon that foundation.

Key Words : Japanese Army stationed in Colonial Korea, military land, military training ground, class, tenancy disputes, land expropriation

원고투고일 : 2026.07.06. 심사수정일 : 2026.08.25. 게재확정일 : 2026.09.09.